



# 제주보육원 생활지도원 공개채용

모집기간 2021.12.02. ~ 12.16

## ☞ 모집부문

### 정규직 생활지도원

- 채용인원 : 1명
- 담당직무
  - 남자 초등 아동 생활지도(학습, 학교생활, 프로그램 진행/인솔 등)
  - 보육일지 및 프로그램 계획서/보고서 작성
  - 시설물 관리
  - 퇴소아동의 사후관리
  -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 급여 : 5급1호 30,325,440원 (세전) ※시간외 포함, 가족수당 미포함
- 임용(채용계약) : 채용 확정 후 즉시

## ☞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1항에 해당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마약,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자
- 상주 근무 가능자
- 만60세 미만인자(※시설 정년 만60세)
-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

## ⇒전형일정

21.12.02~12.16

21.12.03~12.19

2021.12.21

채용

서류전형  
(18시까지)

1. 면접전형  
2. 인성검사

합격  
(홈페이지 공지)

1. 건강검진  
2. 범죄경력조회

수습평가  
(3개월)

1.입사결정  
2.채용계약

- ♦ 상기 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하여 일정 조정 후 접수기간 내에 수시 면접 실시**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함
- ♦ 각 전형별 상세일정은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함
- ♦ 인성검사, 건강진단서, 범죄경력 조회 후 이상 없을시 임용(채용계약) 진행됨

##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 1. 제출서류

1) 자사양식 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1 서식) 1부

2) 코로나 19 백신접종 증명서

\* 정부24([www.gov.kr](http://www.gov.kr)),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어플리케이션 '쿠브(COOV)'에서 출력 가능 – 캡쳐본 가능

### 2. 지원방법

1) 이메일 접수 ([jeju887@hanmail.net](mailto:jeju887@hanmail.net))

-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 2021년 12월16일(목),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 메일 열람 후 지원완료 문자 발송
- ♦ 자격증, 경력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은 최종 합격 후 제출
- ♦ **서류전형 합격자와 일정 조정 후 수시 면접 실시**

## ⇒기타(유의)사항

1.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임용은 결원 발생에 따라 합격순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7.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제주보육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8. 기타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 관련 법령 정보

#####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20. 12. 29.>
  1. 미성년자
  -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본조신설 2012. 1. 26.]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2016. 3. 22., 2016. 5. 29.,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19. 1. 15., 2020. 4. 7., 2020. 12. 29.〉

- 직무내용 및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제주보육원내 인사담당자 (☎ 064-743-5020) -